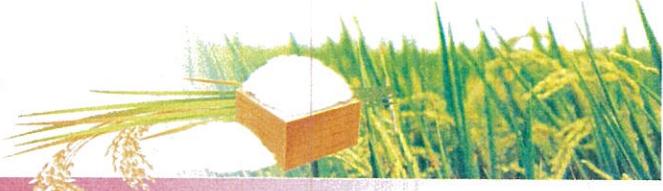


쌀소득보전직불금



신청자격
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

* 제외대상 : 1.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(2015년)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
2.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m²미만인 자
3.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 중인 자

대상농지 농지법상 “농지”를 말함

-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재배)에 이용된 농지

* 등록신청 연도 현재 벼,연근,미나리,왕골 그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(휴경 포함)되는 농지 (변동직불금은 실제 벼재배농지)

지급단가

- 쌀고정직불금 : 평균 100만원/ha
- 쌀변동직불금 : 수확기 평균 쌀값(당해 10월~익년1월)에 따라 결정

지급상한면적

- 농업인 : 30ha, 농업법인 : 50ha * 단, 농업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400ha

등록신청서 제출

1) 2015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

2) 1)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“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” 하게 받은 사람: “등록신청서, 경작사실 확인서, 영농기록 1건(관내)또는 2건(관외)” 제출

* 단,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·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의 요건 증빙

② ①이외의 자 : 등록신청서, 경작사실 확인서, 영농기록 1건(관내)또는 2건(관외) 및 다음 중 하나

- 후계농업경영인·전업농업인 등 증명서, 사망·고령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

-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m²(법인 5만m²)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(법인4천5백만원) 이상 증명서(단,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·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의 요건 증빙)

※ 자세한 내용은 직불금 콜센터(1644-8778) 또는 2016년도 직불사업시행지침서 참조

“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”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에 처할 수 있음

밭농업직불금



신청자격
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
- * 제외대상 : 1.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(2015년)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
2.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(밭고정+논이모작)이 1천m²미만인 자
3.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 중인 자

대상농지 농지법상 “농지”를 말함

- **밭고정** :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(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지급대상, 신청 연도에는 휴경 포함)
* '16년부터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 : ('15) 26개 품목 40만원/ha, 밭고정 25→('16) 밭고정 40
- **논이모작** :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·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
* 자경농지를 식량·사료작물 등의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(사용대)가 가능하며, 실경작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

지급단가

- 밭고정직불금 : 40만원/ha
 - 논이모작직불금(식량·사료작물) : 50만원/ha
- * 양파, 마늘, 고추 등은 제외 됨(식량·사료작물만 해당)

지급상한면적

- 밭고정 : 농업인 4ha, 농업법인 10ha
- 논이모작(사료·식량작물) :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, 들녘경영체 400ha

등록신청서 제출

- 1) 2015년도 밭농업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
- 2) 1)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: 등록신청서, 경작사실 확인서, 영농기록 1건(관내) 또는 2건(관외)

* 단,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·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의 요건 증빙

* 읍·면·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, 농지원부, 토지대장등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

* 자세한 내용은 직불금 콜센터(1644-8778) 또는 2016년도 직불사업시행지침서 참조

조건불리지역직불금



신청자격

-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 (주민등록지)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(농업법인 포함)
 - * 제외대상 : 1.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(2015년)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
 - 2. 농지 및 초지 면적이 각각 1천㎡미만인 자

대상농지

-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*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 (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'03년부터 '05년까지 농업에 이용·관리된 것에 한함)
 - * 농식품부 장관이 경지를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

지급단가

- 농지 50만원/ha
- 초지 25만원/ha

지급상한면적

- 농업인 : 밭(과수원포함) 4ha, 논·초지 각각 30ha
- 농업법인 : 밭(과수원포함) 10ha, 논·초지 각각 50ha

등록신청서 제출

- 1) 2015년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
- 2) 1)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*

- * ①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지임을 증명하는 서류
- ② 임차·사용차한 농지의 경우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
- ③ 논농업·밭농업·조리불리농지(초지)에 이용된 농지확인서

※ 자세한 내용은 직불금 콜센터(1644-8778) 또는
2016년도 직불사업시행지침서 참조

